제316회 정례회
2012. 12. 2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0(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미애 의원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11월 28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12월 13일

○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1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공포함.(2012. 3. 16 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의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석평가 대상에 도지사 제·개정조례 및 규칙,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 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책 및 사업”을 포함(안 제5조)

○ 분석평가 고려사항으로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안 제6조)

○ 매년 평가결과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8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9, 10조)

○ 성인지 감수성 및 분석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안 제12조)

○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단체 위탁으로 소속기관 등에 자문 제공 가능토록 함.(안 제13조)

○ 분석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분석평가에 관련된 정보수집·보급, 분석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및 분석평가와 관련한 정보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 함.(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 동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시행에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시행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는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분석평가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충청북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가
2. 여성 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분석평가 교육 등)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자문)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2. 분석평가 관련 홍보 및 교육
3.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문에 관한 업무를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관련 성별통계의 구축·생산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성별통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유형 및 육성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수당, 회의비

2. 비용 발생 요인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 및 공무원 교육의 필요경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9조(위원회설치)

○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2조(분석평가교육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강사수당 : 연6,000천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 : 연6,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변 혜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1년)	2차년도 (2012년)	3차년도 (2013년)	4차년도 (2014년)	5차년도 (2015년)	계
세 입							
세 출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교육강사수당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위원 참석수당			6,000	6,000	6,000	6,000	30,000
재원 조달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지방세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관 계 법 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

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